



제 428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박·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재교육 이수 의무 명확화 등〉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275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선박·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재교육 이수 의무 명확화	3
2.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명확화 등	8

I. 제안경위

2025년 7월 4일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임명된 후에도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교육을 이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임명 요건에 대한 규정만 있기 때문에 동 관리인이 임명된 이후에도 재교육 이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후에도 재교육 이수 요건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보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재교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6조 및 제132조 개정).

또한,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이나 유해액체물질이 일정량 이상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의 착수 시점(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 규정만 있고,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의 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개정 및 제77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선박·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재교육 이수 의무 명확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보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132조제4항제5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u>임명</u>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명 이상을 추가로 <u>임명</u> 하여야 한다.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 ----- ----- ----- ----- ----- ----- ----- <u>임명·보유</u> ----- ----- ----- ----- <u>임명·보유</u>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인)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u>임명</u>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32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u>임명</u>하지 아니한 자 6. ~ 18. (생략)	인) ①----- ----- ----- ----- ----- ----- ----- - <u>임명·보유</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임명·보유</u>----- 6. ~ 18.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2조에 따르면¹⁾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1)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명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는²⁾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³⁾

- 한편, 현행법 제121조에 따라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와 관련하여 선박·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음.

2)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4)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2.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 요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5)

구분	자격 요건
선박 해양오염 방지관리인	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선장·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일 것 나. 법 제121조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이수한 날부터 5년(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에 승선 중인 경우에는 6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해양시설 해양오염 방지관리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을 것 2)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나. 법 제121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한다)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 이후에도 해당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임명 당시에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임명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재교육을 통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 개정안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명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의 취지에 따르면 선박이나 해양시설 내 기존에 임명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함.

오염물질 등의 배출방지 관리라는 동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재교육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해양오염관리인을 임명·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 해양오염관리인을 임명한 이후에 해양오염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계속 보유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임명한 해양오염관리인을 그대로 보유하면 된다는 것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입법 취지에 맞게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해양수산부는 시행령에 임명 요건만 규정되어 있고, 해당 요건의 지속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 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보유 요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명확화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시 실시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주기 등의 명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실시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제77조제2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u><신설></u>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 ----- -----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통보-----.
②·③ (생략)	②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7조에 따르면⁵⁾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⁶⁾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착수 시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조사 결과에

5)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③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
2.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한 통보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에 따라 변하는 조류, 해양생태 등 해양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조사 데이터 확보 및 관련 영향예측이 필요하며, 조사기간에 따라 해양오염 영향조사 비용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기간 및 조사 주기 등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개정안은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주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실시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통일된 조사 지침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오염의 사전 예방 및 해양환경 보전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법 제80조 및 제82조에서는 같은 법 제77조 각 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조항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에 대한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 통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8